

회계감사인특성과 자산손상회계처리*

최수미**

〈요 약〉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은 기업의 재무보고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통해 자산손상차손의 재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손상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이 갖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이익조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정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자산손상인식여부가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상향 감사인교체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non-Big4에서 Big4로 교체한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이 감사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영업권손상차손의 경우, 감사인교체하지 않은 기업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의미있게 나타났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경우, 적자회피 이익조정가능성이 높고 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고자산손상차손에 대한 실증분석한 결과 non-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감사인교체에 대해서는 non-Big4에서 Big4로 상향 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Big4에서 non-Big4로 하향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 자산손상인식에 있어 경영자의 재량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감사품질이 자산의 장부가액과 비용을 적정하게 보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감사인특성, 자산손상차손, 이익조정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umi@cnu.ac.kr

I. 서 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는 급격한 시가하락이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을 경우 자산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면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손상차손회계처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2006년까지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 드물었고, 2007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손상에 대해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는데 회수가능액 산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상장회사의 핵심감사사항 공시현황분석결과에서 수익인식 다음으로 자산손상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하이마트는 2007년말 총자산은 1조 125억원 자기자본은 4,181억원 이었지만, 2010년말 총 자산은 2조 6,572억원 자기자본은 9,987억원으로 3년 동안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주)하이마트가 K-GAAP하에서 영업권 1조 6,833억원을 매년 상각하였지만 2010년 K-IFRS를 도입하면서 영업권상각 전의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주)하이마트의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난 2003년과 2007년에 각각 (주)조흥은행과 (주)LG카드를 인수한 이후 매년 4,000억원 가량의 영업권상각을 해왔지만 2011년 K-IFRS를 도입하면서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여부를 평가한 후 영업권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순이익의 상승효과를 보았다. (주)하이마트와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감액손실을 재량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본이 늘고 순이익이 수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감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사품질은 기업 재무보고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산손상차손의 재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손상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이 갖게 되면서 이를 이익조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순공정가액과 사용가치 둘 다 추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외의 영업권손상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영업권손상평가에 경영자의 자의성과 주관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을 조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Hamberg et al.(2011)은 스웨덴 기업을 대상으로 IFRS도입 후 영업권 손상차손이 도입전 영업권 상각 및 손상차손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Jordan and Clark(2004) 와 Bens et al.(2011)은 SFAS 142에서 요구하는 영업권 손상평가는 경영자에게 재량을 부여해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손상된 자산의 공정가치는 종종 사적정보에 의존하여 측정되므

로 재량이 남용될 수 있고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Ball 2009), 심지어 경영자가 바라지 않는 손상차손의 인식시기를 조정하거나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Eldridge 2005).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EU나 호주 등의 경우에는 영업권 손상인식에 대한 자의성과 주관성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들이 있다(Carlin and Finch 2008, 2011 ; Wines et al. 2007). 특히 Carlin and Finch(2008, 2011)는 영업권 손상검사과정에서 경영자의 판단범위가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므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았으며,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범위의 결정과 각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할인율의 의사결정이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인특성으로 감사품질을 측정하고, 감사법인 규모가 크고, 감사인교체가 상향으로 발생할 때 감사품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산의 공정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장부에 반영하는 취지로 자산손상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자산손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재량적으로 이루어져 이익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감사품질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사인교체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어 감사인교체의 효과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II. 선행연구

1. 자산손상과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

자산손상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로는 자산손상을 인식하는 기업의 특성을 검증하는 선행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순석과 문현주의 연구(2005)에 의하면 손상차손은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으로 인한다고 하였다. 조현우와 백원선(2006)은 이익유연화, 빅베스 유인이 높은 기업이 자산손상인식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손상차손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손상차손이 주로 유형자산과 영업권에서 나타나 국내연구로 영업권의 손상차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손혁 등(2011)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인식한 기업이 영업권 손상검토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되어 경영자 재량에 따라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광수근 등(2011)은 유진그룹의 사례를 통해 K-IFRS를 조기 적용하게 되면 영업권 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진그룹이 K-IFRS를 조기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박미희와 조문기(2013)에 의하면,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량적 발생액과 다르게 실제이익조정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업권손상차손과 관련하여 경영자 교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로 박석진과 이은철(2014)의 연구가 있다. 분석결과 경영자가 교체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자 교체연도에 영업권 손상차손을 보다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경영자의 교체연도에 신임경영자가 이익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영업권손상차손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하였다.

아울러 영업권의 고유특성인 미래성장기회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임영관(2014)은 영업권 평가시 실질적인 공정가치평가기준이 적용된 이후 미래성장기회와 영업권손상차손인식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미와 오영균(2015)은 K-IFRS도입 이후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은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이익조정과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모두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2. 감사인특성과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

감사인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감사인규모, 비감사서비스, 감사보수, 산업전문성, 감사인교체 등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감사인규모와 감사인교체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감사인규모와 관련해서는 DeAngelo(1981)이 대규모 감사인의 경우 피감사기업이 많기 때문에 명성하락으로 인해 피감사기업을 잃게 될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피감사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타협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소규모 감사인과 비교하여 더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대규모감사인은 미국감사인과 제휴를 맺은 감사인으로 현재 Big4(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를 의미한다.

이후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이 강화되어 감사품질이 높다는 연구가 이어졌다(Francis and Simon 1987). 감사인명성과 관련해서 명성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명성이 구축되고 나면 감사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수임료가 상승한다(Francis and Wilson 1988). 이러한 감사인 명성 유무를 대규모 감사인여부로 측정한다.

감사인교체와 감사품질 간 관계에 관한 연구로 Chow와 Rice(1982)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향이 있으나, 감사인을 교체가 이후에 감사의견이 개선되는 결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Krishnan(1994)은 감사인 교체의 원인이 전임 감사인이 보수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사인 교체이후에는 시장 평균 감사인보다 감사인의 보수적 성향이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교체방향과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로는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면 전임감사인이 Big4일 때 후임감사인이 non-Big4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고

전임감사인인 non-Big4일때에도 non-Big4로 수평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Big4에서 후임감사인을 non-Big4 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 상향 이익조정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Davidson III et al. 2006). 박종일과 곽수근(2007)은 감사인교체기업이 교체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할 때 이익조정액이 크다고 하였다. 하지만 감사인교체방향과 이익조정간에는 체계적인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박종일과 남혜정(2014)에 의하면 전기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할 때 보고이익이 상향조정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감사인 교체연도에 상향 이익조정 현상이 나타났으며 교체 후 non-Big4 감사인인 경우 보고이익의 상향조정이 나타나 감사인교체로 기업이 이익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감사인교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감사인교체방향과 이익조정간에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한정의를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검증함으로써 표본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가설설정 및 실증모형

1. 가설설정

자산의 손상차손은 K-IFRS 제1036호에 의하면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산에서 차감한다. 다만, 재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경우 우선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재고자산의 경우 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손상징후를 검토한 결과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사용가치는 자산의 계속 사용과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한다. 따라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데에는 재량적 요소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영업권의 경우 매년 손상여부를 평가하거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그보다 더 자주 손상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영업권 손상인식에 대한 경영자의 자의성과 주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업권손상평가와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업권손상평가에 경영자의 자의성과 주관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을 조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자산의 손상평가 회계처리에 경영자의 재량이 반영될 소지가 많고 이에 따라 경영자는 자산손상차손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할 개연성이 높다.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는 기업은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거나, 자산손상차손을 소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이 있는 기업은 자산손상차손을 과대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인의 특성 중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이 강화되어 감사품질이 높고, 감사인명성과 관련해서 명성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명성이 구축되고 나면 감사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수임료가 상승한다. 이러한 감사인 명성 유무를 대규모 감사인여부로 검증한다. 또한, 감사인규모에 따라 이익조정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자산손상차손인식에 있어서도 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징후가 있을 때 그 실질을 장부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설1에서는 Big4와 non-Big4 감사기업이 자산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감사인교체와 관련해서도 non-Big4에서 Big4로 상향교체한 경우와 Big4에서 non-Big4로 하향교체한 경우도 자산손상차손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가설 1 :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준서 제1036호에 의하면 영업권손상차손은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 능력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002호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진부화되거나 판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추가원가가 상승했을 때 순실현가능가치를 측정하여 취득원가보다 낮을 때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자산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따라 감사인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설2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영업권, 유형자산, 재고자산)별 손상차손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가설 2 :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손상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 중 소폭 적자를 보고한 기업의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여 소폭 흑자로 보고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적자보고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폭 적자가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흑자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사인에 의해 이익상향조정을 하려는 재량적 의도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높을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감사인에 의해 이익상향조정현상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손상차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3 : 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손상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실증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impaired_{it}$ 는 자산손상차손인식여부로 하였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손상차손인식여부($gimd_{it}$), 유형자산손상차손인식여부($taimd_{it}$), 재고자산평가차손인식여부($invimd_{it}$)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emd_{it} 는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액으로 측정하는데 Burgstahler와 Dichev(1997)에 의하면 순이익분포에서 0을 기준으로 적은 분포에서 흑자기업의 빈도가 적자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크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국내기업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 또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송인만 2005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종권과 윤성수(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익구간을 이용하여 총자산순이익률이 0보다 크고 0.04보다 적은 경우를 이익조정이 있는 기업으로 1, -0.01보다 크고 0보다 적은 경우를 이익조정이 없는 기업으로 0으로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적자인 구간 뿐만 아니라 그 이외 구간도 이익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impaired_{it} = \alpha_0 + \beta_1 size_{it} + \beta_2 lev_{it} + \beta_3 sgrow_{it} + \beta_4 mtb_{it} + \beta_5 emd_{it} + \beta_6 Big4_{it} + \beta_7 Big4_{it} \times emd_{it} + \beta_8 auditsw_{it} + \beta_9 usw_{it} + \beta_{10} dsw_{it} + \beta_{11} hsw_{it} + \varepsilon_{it}$$

(모형)

$impaired_{it}$: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가설2 검증을 위해 종속변수를 아래와 같이 설정

$gimd_{it}$: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taimd_{it}$: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invimd_{it}$: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_{it}$: log(당기말자산총액)

lev_{it} : 부채총액/자산총액

$sgrow_{it}$: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mtb_{it} : 당기말시가총액/당기자본총액

emd_{it} : 총자산순이익률이 0보다 크고 0.04보다 적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여기서, 총자산순이익률의 분자의 경우, 자산손상차손 인식전 순이익으로 함.

$Big4_{it}$: 감사법인이 삼일, 삼정, 안진, 한영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auditsw_{it}$: 당기감사법인이 전기감사법인과 다르면 1, 그렇지 않으면 0

usw_{it} : non-Big4 감사법인에서 Big4감사법인으로 교체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dsw_{it} : Big4감사법인에서 non-Big4감사법인으로 교체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hsw_{it} : Big4감사법인에서 Big4감사법인으로 교체하거나, non-Big4에서 non-Big4로 교체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기업규모($size_{it}$)는 손상차손의 규모가 기업규모가 클수록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부채비율(lev_{it})은 기업의 재무구조의 대리변수로 김정은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기업의 특징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시가장부가비율(mtb_{it})과 매출액증가율($sgrow_{it}$)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mtb_{it} 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성장성으로 측정한 변수이고 $sgrow_{it}$ 는 기업이 실제 달성한 실적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Big4_{it}$ 는 감사인규모가 크고 명성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감사인규모가 크고 명성이 있는 감사인은 외국 감사법인과 제휴한 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으로 하였다. 감사인교체($auditsw_{it}$)변수는 전년도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비적정감사의견을 받았던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¹⁾가 도입되면 강제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교체(usw_{it})는 non-Big4 감사인에서 Big4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를 하향교체(dsw_{it})는 Big4감사인에서 non-Big4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를, 수평교체(hsw_{it})는 Big4에서 Big4로 non-Big4에서 non-Big4로 교체한 경우로 측정하였다. 가설1과 가설2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감사인특성변수인 $Big4_{it}$ 변수의 계수값이 양수(+)로 예상되며, 감사인이 상향교체되는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향교체(usw_{it}) 변수의 계수값이 양수(+)로 예상된다. 가설3의 경우 이익조정변수와 감사인특성변수의 상호작용항인 $Big4_{it} \times emd_{it}$ 의 계수값이 양수(+)로 예상된다.

IV. 실증연구결과

1. 분석대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자산손상차손중단영업손익을 구분하여 공시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12월결산 비금융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은 국내 상장기업을 대표하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KOSPI와 KOSDAQ)중 비금융기업으로 12,162건이다. 연구표본과 통제표본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인식기업이 798개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2018.4.9)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표 1〉 표본기업수

구 분	표본수
연구표본	영업권손상차손인식기업
	55
	유형자산손상차손인식기업
	798
통제표본 (자산손상차손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	재고자산평가손실인식기업
	155
	손상차손 인식기업
	1,008
합 계	11,154
	12,162

2. 기초통계량

기초통계량을 보면 영업권손상차손(평균 0.04)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그 다음 유형자산손상차손(0.01)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본간 분산이 큰 것으로 관찰되어 변수별로 극단치 1%를 기준으로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size	18.94	1.27	15.98	18.72	23.50
lev	0.37	0.20	0.00	0.37	0.96
sgrow	0.04	0.31	-1.00	0.02	2.36
mtb	1.62	1.42	0.25	1.16	10.64
gim	0.04	0.05	0.00	0.02	0.25
taim	0.01	0.02	0.00	0.00	0.18
inveim	0.00	0.01	0.00	0.00	0.08
emd	0.34	0.47	0	0	1
big4	0.51	0.50	0	1	1
auditsw	0.18	0.38	0	0	1
usw	0.02	0.14	0	0	1
dsw	0.04	0.20	0	0	1
hsw	0.05	0.21	0	0	1

- $size_{it}$: $\log$ (당기말자산총액)
 lev_{it} : 부채총액/자산총액
 $sgrow_{it}$: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mtb_{it} : 당기말시가총액/당기자본총액
 gim_{it} : 영업권손상차손/전기말자산총액
 $taim_{it}$: 유형자산손상차손/전기말자산총액
 $inveim_{it}$: 채고자산평가손실/전기말자산총액
 emd_{it} : 총자산순이익률이 0보다 크고 0.04보다 적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여기서, 총자산순이익률의 분자의 경우, 자산손상차손 인식전 순이익으로 함.
 $Big4_{it}$: 감사법인이 삼일, 삼정, 안진, 한영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auditsw_{it}$: 당기감사법인이 전기감사법인과 다르면 1, 그렇지 않으면 0
 usw_{it} : non-Big4 감사법인에서 Big4감사법인으로 교체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dsw_{it} : Big4감사법인에서 non-Big4감사법인으로 교체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hsw_{it} : Big4감사법인에서 Big4감사법인으로 교체하거나, non-Big4에서 non-Big4로 교체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있다. 영업권손상차손(gim)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자산손상차손(taim)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은 높을수록 매출액증가율은 낮을수록 시가/장부가비율은 높을수록 크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채고자산평가손실(inveim)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증가율이 낮을수록, 시가/장부가 비율이 낮을수록,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자회피를 위한 상향 이익조정한 기업은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채고자산평가손실을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일변량 분석이기 때문에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표 3〉 변수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관계)

	size	lev	sgrow	mtb	gim	taim	inveim	emd	big4	auditsw	usw	dsw	hsw
size	1	0.202***	-0.009	-0.165***	-0.31***	-0.208***	-0.144*	0.147***	0.384***	-0.072***	-0.012	-0.077***	0.126***
lev		1	0.03***	0.014	-0.244*	0.086***	0.009	0.081***	0.043***	0.014	0.048***	0.001	0.025***
sgrow			1	0.15***	0.052	-0.127***	-0.004	-0.053***	-0.007	0.024***	0.01	-0.003	0.005
mtb				1	0.194	0.092***	0.004	-0.19***	-0.031***	0.081***	0.017*	0.026***	0.028***
gim					1	-0.164	.	-0.214	0.093	0.003	0.205	.	-0.102
taim						1	0.753***	-0.159***	-0.084***	0.026	0.023	0.001	0.01
inveim							1	-0.179**	-0.027	-0.1	-0.043	0.078	-0.059
emd								1	0.028***	-0.044***	-0.022***	-0.004	-0.005
big4									1	-0.071***	0.135***	-0.211***	0.215***
auditsw										1	0.3***	0.441***	0.477***
usw											1	-0.029***	-0.031***
dsw												1	-0.045***
hsw													1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변수명은 <표 2> 주석참조

3. 자산손상 인식기업과 인식하지 않는 기업의 차이분석

<표 4>는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특성변수와 감사인특성 관련 변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영업권손상차손이나 유형자산손상차손 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한 표본을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차이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규모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도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증가율은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에게 높게 나타났다. 성과관련 변수인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자산손상차손인식기업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적자회피를 위한 (+)의 이익조정의 가능성은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인특성으로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Big4 감사법인이 감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 규모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인교체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산손상차손인식기업에서 상향교체(non-Big4에서 Big4)와 수평교체(Big4에서 Big4, non-Big4에서 non-Big4)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하향교체(Big4에서 non-Big4)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의 차이분석

변수	자산손상차손인식기업	자산손상차손인식하지 않은 기업	T-value
size	19.50	18.89	-14.51***
lev	0.45	0.37	-11.77***
sgrow	0.00	0.05	4.41***
mtb	1.63	1.62	-0.15
emd	0.29	0.34	3.33***
big4	0.60	0.51	-5.42***
auditsw	0.16	0.18	1.08
usw	0.03	0.02	-2.25**
dsw	0.03	0.04	2.29**
hsw	0.06	0.05	-2.05**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변수명은 <표 2> 주석참조

4. 감사인 특성에 따른 자산손상인식 여부 검증결과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자산손상차손 인식여부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향 감사인교체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non-Big4에서 Big4로 교체한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전체 자산손상차손인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이익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익조정과 감사인특성간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결과로 나타나 감사인의 특성이 이익조정을 제어하는 효과가 자산손상차손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감사인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여부 검증결과

종속변수 impaired	계수	wald Chi square-value	Pr > ChiSq
Intercept	8.834	301.404	<.0001
size	0.308	128.345***	<.0001
lev	1.608	85.522***	<.0001
sgrow	-0.634	25.454***	<.0001
mtb	0.035	2.056	0.1516
emd	-0.537	19.342***	<.0001
big4	-0.107	1.345	0.2462
big4×emd	0.184	1.436	0.2308
auditsw	-0.184	1.383	0.2396
usw	0.580	4.923**	0.0265
dsw	-0.161	0.409	0.5227
hsw	0.184	0.734	0.3917
Chi square-value		337.2212	
분류정확도		65.80%	
표본수		12,162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impaired :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나머지 변수는 <표 2> 주석참조

종속변수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여부로 실증분석한 결과, 감사인교체하지 않은 기업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의미있게 나타났다.

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영업권손상차손인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6〉 감사인특성에 따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여부 검증결과

종속변수 gimd	계수	wald Chisquare—value	Pr > ChiSq
Intercept	1.658	0.452	0.5015
size	-0.217	2.615	0.1059
lev	1.962	7.764	0.0053
sgrow	0.315	0.638	0.4245
mtb	0.024	0.073	0.7864
emd	-0.747	2.6583*	0.1000
big4	-0.481	2.023	0.1549
big4 × emd	0.371	0.318	0.5731
auditsw	-1.803	3.1531*	0.0758
usw	1.626	1.272	0.2594
dsw	11.471	0.001	0.9779
hsw	1.735	1.911	0.1668
Chi square—value		20.8	
분류정확도		61.60%	
표본수		11,209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gimd :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나머지 변수는 <표 2> 주석참조

종속변수를 유형자산손상차손 인식여부로 실증분석한 결과 적자회피 이익조정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non-Big4에서 Big4로 상향 교체한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는 유형자산손상차손인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익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Big4가 감사한다면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익조정과 감사인특성간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감사

인의 특성이 이익조정을 제어하는 효과가 자산손상차손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감사인특성에 따라 유형자산손상차손 인식여부 검증결과

종속변수 taimd	계수	wald Chisquare-value	Pr > ChiSq
Intercept	10.174	348.845	<.0001
size	0.359	152.929***	<.0001
lev	1.583	68.476***	<.0001
sgrow	-0.743	27.654***	<.0001
mtb	0.028	1.131	0.2875
emd	-0.687	20.65***	<.0001
big4	0.143	1.905	0.1675
big4 × emd	0.284	2.480*	0.1153
auditsw	-0.196	1.084	0.2976
usw	0.472	2.505*	0.1135
dsw	0.296	1.182	0.2768
hsw	-0.195	0.649	0.4203
Chi square-value		391.9	
분류정확도		68.90%	
표본수		11,952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taimd :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나머지 변수는 <표 2> 주석참조

종속변수를 재고자산손상차손 인식여부로 실증분석한 결과 non-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상과 상반된 결과이다. 그 이유는 재고자산손상차손의 경우 저가법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기준이 되는데 판매가격에서 판매비용을 차감한다. 판매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상품이 출현하거나, 공급의 변동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형자산과 영업권과 다르게 판매가격이 실제 하락하게 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밖에 없어 채량권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non-Big4에서 Big4로 상향 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Big4에서 non-Big4로 하향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감사인 교체방향은 예상한 바와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채고자산평가손실인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이익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감사인특성에 따라 채고자산손상차손 인식여부 검증결과

종속변수 invimd	계수	wald Chisquare—value	Pr > ChiSq
Intercept	4.366	8.359	0.0038
size	-0.009	0.011	0.9166
lev	1.637	14.981***	0.0001
sgrow	-0.353	1.572	0.2099
mtb	0.015	0.066	0.7968
emd	-0.077	0.135	0.7132
big4	-1.261	24.4664***	<.0001
big4 × emd	0.316	0.720	0.3962
auditsw	0.097	0.133	0.7152
usw	1.013	3.3925*	0.0655
dsw	-2.426	5.5481**	0.0185
hsw	-0.352	0.286	0.5926
Chi square—value		60.1	
분류정확도		65.90%	
표본수		11,309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invimd : 채고자산평가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나머지 변수는 <표 2> 주석참조

V. 결론 및 시사점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손상차손회계처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2006년까지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 드물었고, 2007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손상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계상하게 되는데 회수가능액 측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감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사품질은 기업의 재무보고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통해 자산손상차손의 재량권 행사를 제

한할 수 있다. 자산손상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이 갖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이익조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이를 제어할 수 있다면 감사품질과 관련된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을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정도가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자산손상인식여부가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상향 감사인교체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인 상향 교체한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인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이 감사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권손상차손의 경우, 감사인교체하지 않은 기업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의미있게 나타났다.

둘째,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경우, 적자회피 이익조정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non-Big4에서 Big4로 상향 교체한 경우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종속변수를 재고자산손상차손 인식여부로 실증분석한 결과 non-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재량권행사가 어려운 판매가격 하락을 자산손상차손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non-Big4에서 Big4로 상향 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Big4에서 non-Big4로 하향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감사인 교체방향은 예상한 바와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전체 자산손상차손인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이익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영업권손상차손인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인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이익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Big4가 감사한다면,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익조정과 감사인특성간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감사인의 특성이 이익조정을 제어하는 효과가 자산손상차손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가능성은 이익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 자산손상인식에 있어 경영자의 재량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감사품질이 자산의 장부가액과 비용을 적정하게 보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계점은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을 분석하였는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의 통제표본으로 기업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영업권손상차손을 제외한 다른 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와 무형자산손상차손 인식의 실무관행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특성으로 감사인규모와 감사인교체 변수만을 사용하였으나, 감사시간이나 인력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종권 · 윤성수. 2006. “채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 65-101.
- 곽수근 · 박종일. 2010. “유가증권상장, 코스닥등록 및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분석”. 회계저널 제19권 제4호 : 197-230.
- 곽수근 · 이준일 · 박선영. 2011. “유진그룹의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과 하이마트 인수관련 영업권 회계처리 사례”.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 91-121.
- 권영모 · 전성일 · 임종욱. 2013. “K-IFRS 공시전 후 기타포괄손익과 특별손익에 의한 이익관리 차이분석”.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3권 제3호 : 25-45.
- 박미희 · 조문기. 2013. “손상차손의 인식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35권 : 1-25.
- 박석진 · 이은철. 2014. “영업권손상인식의 전략적 회계처리,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를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 : 105-138.
- 박종일 · 곽수근. 2007. “감사인교체와 감사품질”. 회계와 감사연구 제46권 : 191-226.
- 박종일 · 남혜정. 2014. “전기 비적정감사의견이 감사인 교체방향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비상장기업의 의견구매”. 회계학연구 제39권 제6호 : 1-56.
- 삼일회계법인. 2019.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9
- 손 혁 · 박영진 · 박성진. 2011.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 207-238.
- 윤순석 · 문현주. 2005. “감액손실의 재량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3호 : 195-214.
- 조현우 · 백원선. 2006. “감액손실의 인식유인과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1권 제2호 : 1-34.
- 최수미 · 오영균. 2015. “K-IFRS 도입에 따른 영업권 회계처리와 이익조정”. 회계연구 제20권 제1호 : 175-208.
- Ball, R. 2009.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 Pros and Cons for Investors. *Accounting & Business Research* 36 : 5-27.
- Bens, D.A., W. Heltzer, and B. Segal. 2011. The Information Content of Goodwill Impairments and SFAS 142.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26(3) : 527-555.
- Burgstahler, D. and I.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1) : 99-126.
- Carlin, T. M., and N. Finch. 2011. Goodwill impairment testing under IFRS, a false impossible shore? *Pacific Accounting Review* 23(3) : 368-392.
- Chow, C.W. and S.T. Rice. 1982.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auditor switching, *the Accounting Review* 57(2) : 326-336.
- Davidson III. W. N., P.Jirapron, and P. DaDalt. 2006. Causes and Consequences of Audit

- Shopping : An Analysis of Auditor Opinions,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 Changes, *Quarterly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45(1) : 69–87.
- DeAngelo, L.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 183–199.
- Eldridge, S. 2005. Goodwill Impairment Potential, Lessons From Purchase Acquisitions, *Bank Accounting and Finance* 3 : 3–11.
- Francis, J.R. and D.T. Simon. 1987. A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2(1) : 145–157.
- Francis, J.R. and E.R. Wilson. 1988. Auditor changes : a joint test of theories relating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 *the Accounting Review* 63(4) : 663–681.
- Gordon, E.A., and H. T. Hsu, 2018. Tangible Long–Lived Asset Impairments and Future Operating Cash Flows under U.S. GAAP and IFRS, *The Accounting Review* 93(1) : 187–211.
- Hamberg, M., M. Paananen, and J. Novak. 2011. The Adoption of IFRS 3, The Effects of Managerial Discretion and Stock Market Reactions, *European Accounting Review* 20(2) : 263–288.
- Hoskin, R.E., J.S. Hughes and W.E. Ricks. 1986. Evidence on the Incremental Information Content of Additional Firms Disclosures Made Concurrently with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upplement) : 1–32.
- Krishnan, J. 1994. Auditor switching and con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69(1) : 200–215.
- Jordan, C., and S. Clark. 2004. Big Bath Earnings Management, The case of Goodwill Impairment Under SFAS No.142,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20(2) : 63–70.
- Wines, G., R. Dagwell, and C. Windsor. 2007. Implications of the IFRS goodwill accounting treatment,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2(9) : 862–880.

Audit Characteristics and Asset Impairment Recognition*

Sumi Choi**

〈Abstract〉

This paper is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an asset impairments depending on the audit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local listed companies from 2011 to 2018 on whether their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on assets differed depending on the audit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verifying that the recognition of an asset impairment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or,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an entity will recognize an asset impairments when it changes from non-Big4 to Big4 as a result.

Validation of whether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s by assets is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or indicates that, for goodwill impairment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non-Big4 auditor recognizes goodwill impairments. For impairments on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for entities that are highly probable of positive earnings' management, the recognition was highly probable for those entities audited by Big4. That means high audit quality affect the recognition of tangible asset impairments. The inventory impairments are likely to be recognized for entities audited by non-Big4.

In summar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recognizing asset impairments when the quality of the audit is high, and for an entity with positive earnings management, it was less likely to recognize an asset impairments. In the case of high audit quality, management's discretion in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of assets is limited and that audit quality contributes to the proper reporting of the asset's carrying amount and the cost.

〈Key words〉 auditor's characteristics, asset impairment, earnings mana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chool of Business), sumi@cnu.ac.kr